

=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0. 10 - - - - 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7. 10. 15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('07.10.2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조동규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2006. 12. 30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토지의 지하,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(안 제28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6항에 이미 규정됨.
-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·대부시 사용·대부료를 최대 80%까지 감면규정 신설(안 제31조제2항)
- 제38조의 조성원가 매각 근거규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27조제8항을 제42조로 인용조항 변경(안 제38조)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39조)
 - 중복성이 있는 1호와 4호중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작은 1호를 삭제
 -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할 수 있는 규정 신설
- 분수림의 설정 삭제(안 제43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관련규정 삭제
-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인상(안 제63조)
 - 총 보상금 한도액 : 1천만원 → 3천만원
 - 필지별 보상금 한도액 : 100만원~200만원 → 300만원~600만원 [별표1]

3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제32조1항, 제84조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(제31조, 제38조, 제42조, 제47조, 제84조)
-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46조)
-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(제4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 개정안은

2006. 12. 30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7. 7. 27 송부된 행정자치부의 「표준안」을 참고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어 있음.

○ 개정사항은 크게 3개 유형으로

- 첫째,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조항을 수정·보완하고
- 둘째,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
- 셋째,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,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음

○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

-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

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, 은닉재산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보상금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였으며

-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측면에서는

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80%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

- 이밖에, 삭제된 부분은

조례 제28조 「토지의 지하,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」 조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6항」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고, 조례 제43조 「분수림의 설정」 조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해당내용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, 2001. 1. 26 개정된 「산림법」에서도 분수림 규정이 삭제된 사항임.

○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

2006. 12. 30 개정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내용을 근간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원하면서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